

# 學校圖書館 法的・行政上의 問題點

金 昭



## 内 容

I. 序論	問題
II. 圖書館의 教育的 意義	3. 司書教師 및 學校司書에 關한 問題
III. 學校圖書館의 機能과 教育的 活動	i) 司書教師分 配置基準
IV. 學校圖書館의 法的・行政組織上의 問題	ii) 司書教師의 法的地位
1. 學校圖書館 行政組織上의 問題	iii) 學校司書에 關한 問題
2. 學校圖書館 設置 및 施設에 關한 問題	4. 學校圖書館 資料에 關한 問題
V. 結論	

## I. 序論

오늘날 圖書館이 對한 社會의 기대와 이 기대에 부응한 圖書館의 優能整備, 情報分蓄積方法나 이의 活動은 “知識爆發”에 對應하는 대로 圖書館象의 確立를 代替해주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도 圖書館에 封한 傳統的이고 古典的인 思考方式 즉 “書庫” “讀書室”이라는 한계에서 文化暢達의 條件形成이라는 그다 守形적인 관계에서 圖書館의 象을 定立해야 할 要求에 당면해 있다.

특히 小校圖書館은 學生에 對한 預防적, 조작적인 教育的 活動을 준비해야 한다는 所以나의 重要한 機能을 充當할 수 있어야 한다. 事實上 小校圖書館의 目標는 教育의 一般目的에서 導出된 것이며, 다만 教育의 目標가 實體의이라면 小校圖書館의 目標는 수단적, 조성적 위치에 선다는 意에서 別別 될 뿐이다.

이러한 圖書館이 우리나라에서는 그 重要性을 認定받지 못하고 그로 因해 초래되는 미효율적인 教育의 성과 또한 크리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圖書館이 그 重要性을 인정받지 못하고 圖書館發展을 저해하는 가장 큰 要因은 圖書館이 法的・行政的인 特性을 具有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附帶되어 現行 圖書館 관계법과 사전법, 그리고 行政組織의 實態를 本부・派下하여 문제점을 지시 하려는데 本研究의 意義가 있으며 通过 文獻考察을 通하여 圖書館의 重要性을 시사한 데 圖書館의 問題點을 強調코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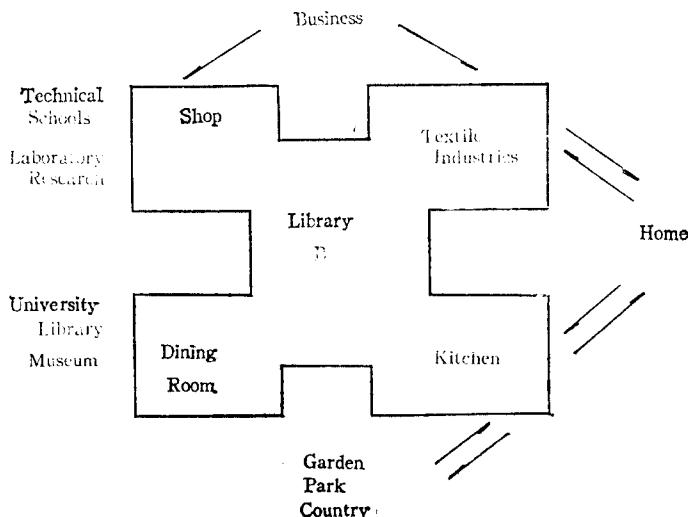
★ 大邱教育大學 圖書館 司書長

## II. 圖書館의 教育的 意義

圖書資料는 人類文化遺産 傳達의 主要한 媒介物이며 圖書館은 이 媒介物을 源泉으로 이루여 진다. 그때서 圖書館은 그 時代의 社會文化의 亂世과 時期를 같이 해 왔다. 「現代의 美國圖書館은 지난 20年 동안 美國人の 生活에서 찾을 수 있는 큰 변화의 사실에서 이루어진 欲求에 의한 것이다」<sup>(1)</sup> 더 具體的으로 現代의 圖書館은 現代社會의 特性 즉 「職業生活 및 生活標準에의 再適應, 不安과 積極, 生活 pattern의 再定立」<sup>(2)</sup>의 表現이라는 것이다.

社會의 文化가 特定集團에 의해 享有되고 傳達되고 있던 시대의 圖書館은 資料蓄積 혹은 個人文庫의 意義로서 충분한 것이었고 利用 보다는 繼承이라는 것으로써 충분했다면 現代社會의 出現以後의 圖書館은 民衆의 人權과 自由 그리고 배울 수 있는 權利와 機会의 產物로서 繼承보다는 오히려 利用이라는 意味를 가지게 되었단 것이다.

首先로 傳統社會에서의 圖書館은 傳統社會의 教育 즉 知力, 離力, 血緣의 賴族主義教育과 實踐의 球魂이 결합된 大量주의의 論理로서 現代社會의 圖書館은 現代의 教育 즉 大



(1) Fargo, L. F., *The Library in the School*,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30.

(2) Henry, N. B., (ed) *The Library in General Education*, p.15.

(3) Dewey, J., *The School and Socie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3. p.72.

衆化, 普遍化, 實用化와 같은 관점을 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뜻에서 「圖書館은 教育의 思潮에 따라 教育에 대한 그 位置와 重要性도 달리 認識되어 온 것」<sup>(4)</sup>이다.

教科書를 絶對視하고 所定의 知識과 技能의 傳達 단을 강조하는 注入式 教育에서는 암기·기억·이해와 같은 受動的 他律的 活動이 主가 되기에 圖書館의 存在意義는 讀書場所로서 足하였다 것이다. 教育이 「兒童의 興味와 關心을 重視하고 自主的인 學習을 通하여 個性을 伸張시키려고」<sup>(5)</sup> 할 때의 圖書館은 資料센터로서 絶對的인 位置를 占有하게 된다. John Dewey의 學校圖書館 模型圖는 圖書館이 學校教育의 中心의 인機能源으로서 理論化 시킨 것이다.

앞의 그림은 學校라는 건축물내에 具體化 하자 하는 觀念의 圖式的 表現<sup>(6)</sup>으로서 「教育은 生活로부터 출발하고 生活을 通해서 배우며 그 결과를 生活에 還元한다」<sup>(7)</sup>는 그의 思想을 集約한 것이다. 圖書館은 곧 모든 教育活動의 統合的 機能을 違行하는 곳이 되고 있다. 「아동의 단순한 活動을 위한 종류기의 역할을 하는 곳」<sup>(8)</sup>이 圖書館인 것이다.

1950년대 이후 특히 1960年代 教育의 큰 흐름을 形成하고 있는 知識構造論에서도 圖書館은 중요한 위치에 있게 된다. 知識의 構造論은 오늘날의 知識의 特質이라는 社會的 現狀을 탐색하기 위한 代案으로서 基礎的인 것, 原理的인 것을 教材로써 組織하고<sup>(9)</sup> 학생들의 探求活動을 통하여 이를 확대하려는 것이며 知識構造論에서의 圖書館은 아동들의 探求活動의 源으로서의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다음의 引用文은 이러한 意味를 함축하고 있다. 「오늘날 知識의 範圍가 너무 넓어져서 教室에서 行하여지는 授業의 限界内에서는 그 授業이 설명 아무리 뛰어난 것일지라도 全部를 다룰 수는 있게 되었다. 學校圖書館을 通하여 모든 知識의 領域과 모든 創造的 表現의 樣式에 있어서 제한된 教室授業의 限界를 無限히 擴大시킬 수 있으며, 청소년의 여러 가지 興味 感想力 및 好奇心을 만족시키고 이를 助長시킬 수 있는 方法을 마련할 수가 있다」<sup>(10)</sup>

人間의 知識의 限界가 加速的으로 확대되어 갈수록 차라, 어떤 主題分野에 있어서 이미 개척된 知識의 總量에 對한 한 사람이 所有할 수 있는 知識의 量의 比率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러므로 어떤 學問分野에 관한 知識에 通達하는 次善의 길은 그 지식을 어디서 얻어 냄 것인가를 알아 두는 것이라고 하여도 결코 過言은 아니다. 그리고 圖書館을 自信있게 効果的으로 利用할 줄 아는 方法을 배운 사람은 限界없는 知識

(4) 圖書館教育研究會, 學校圖書館通論, 東京, 學藝圖書, 1970, p.20

(5) 정병모, 教育과 教職學, 서울, 배영사, 1968, p.26

(6) Dewey, J., Op. Cit. p.71.

(7) 김민남, John Dewey, 민주주의 교육론에 관한一考察, 大邱敎大 論文集, 7집, 1970

(8) Dewey, J., Op. cit., p.78

(9) 정병모, Op. Cit., p.93

(10) American Association of School Librarians, (ed.) Standards for School Library Program;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60, p.4 (한국도서관협회, 전국 도서관 실태조사

의 世界에 이르는 열쇠를 손에 쥔 셈이다.<sup>(11)</sup>

다음은 圖書館의 本務에서 教育과의 關聯의 意味를 찾을 수 있다. 韓國 圖書館法 第2條 圖書館이라 함은 「圖書記錄, 視聽覺資料, 鄉土資料 및 기타 필요한 資料를 蕫集, 整理, 保存하여 公衆 또는 特定人의 利用에 供하게 하여 그 調查, 研究, 學習, 教養, レ크레이션 기타 社會教育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을 말한다」라고 定義 내리고 있다. 美國 圖書館協會에서는 「圖書館이란 ① 開覽, 調査, 研究를 위한 整理 및 管理된 一棟의 建物이다」<sup>(12)</sup> 그리고 圖書館은 人間으로서의 生活에 必要한 知識과 經驗 및 思想의 記錄—인쇄된 자료의 蕫集, 管理를 통하여 社會의 發展에 寄與하여 文化의 傳達機關이라고 定義된다. 主로 어떤 特定의 目的一主된 人間生活에 필요한 讀書, 調査, 研究—를 위한 組織된 資料群이다.<sup>(13)</sup>

이와같은 圖書館의 定義를 分析해 보면 첫째, 圖書館의 前提 혹은 條件이 되는 部分, 둘째 對象部分, 셋째 機能部分으로 大別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圖書館의 前提 혹은 條件으로서의 ① 人間生活에의 必要性 ② 社會發展, 對象으로서는 調査, 研究, 讀書를 들 수 있다.

圖書館은 人間生活과 社會發展에 奇與할 수 있는 一切 資料<sup>(14)</sup>를 整理 管理하여 人們를 하여금 이 資料를 利用할 수 있도록 奉仕하는 데서 그 本務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볼 때 圖書館의 本務는 文化暢達의 原理 즉 「모든 文化가 가장 優과적으로 신속히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條件을 造成해 주는 것」<sup>(15)</sup>과 같은 관係을 가지게 된다. 圖書館은 文化를 축적하고 이 축적은 선택적이며(人間生活과 社會發展을 基準으로) 선택된 文化를 보급, 습득 시키므로서 새로운 文化的 전신을 신속화 하고 優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도서관의 이러한 文化傳達 및 文化建設은 教育의 구요한 機能으로서 認定되고 있다.<sup>(16)</sup>

教育은 우리에게 값어치 있다고 평가되는 文化를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확장시키는 임무를 떠고 있으며 미래의 社會를豫見하고 그豫見된 社會를 모형으로 하여 人間을 教育하므로써 文化를創造하는 것이다. 도서관의 이 教育의 機能遂行에 時間과 努力を 결약시키고 優과적인 方案, 方법, 기술을 제공하여 教育된 結果를 다시 整理, 選擇하여 保管, 傳承케 하는 것이다. 요컨대 圖書館은 現代社會를 構成하고 있는 모든

(하), 1971)

(11) Nicholson, Harry L. and Sirion, P. st. John, "Foreword" in the Intergrating Library Instruction with Classroom Teaching of Plainview Junior High School by Elsa Berner;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58, p. iii

(12) 圖書館研究會, *Op.Cit.*, p.8

(13) 室內武外, 校園圖書館事典: 東京, 第一法則, p.15

(14) 圖書館教育研究會, *Op.Cit.*, p. 10 (① 어떤 사실에서는 사건에 관한 지식 ② 새로운 보도, 화제에 대한 사실 ③ 어떤 특수한 사실, 주제, 사건에 관한 보도 ④ 넓은 의미의 일반적 지식 ⑤ 과학 기술에 대한 지식 ⑥ 인간의 마음 및 성격의 형성에 관한 연습, 훈련, 교수, 교육의 지식 ⑦ 여러가지 인간의 형성 및 성격변화에 요하는 성질의 지성 영감 및 활기)

(15) 정필모, "한국 도서관교육의 반성" 도령월보, Vlo. 8, No. 5, p. 189

(16) 진원중, 教育社會學, 서울, 범문사, 1971. p. 15

文化的 기관 (가장 중요한 文化的 기관으로써 교육기관)과 각 지역 사회의 市民들이 圖書館을 通하여 그들이 必要로 하는 圖書와 文獻을 가장 효과적으로 자유로이 利用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가능한 條件을 제공해 줌으로서 文化的 發展을 効果的으로 촉진하는 것이다.<sup>(17)</sup>

### III. 學校圖書館의 機能과 教育的 活動

學校도서관의 目標를 성취하기 위해 學校圖書館이 어떻게 해야 할 役割 혹은 機能은 무엇일까? 학교도서관이 單純히 圖書保管所가 아닌 「高度로 專門化된 교육적 봉사를 위한 指導機關(instructional service)이다」라는 뜻에서 現代學校 圖書館의 役割을 잘 示唆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즉 學校도서관은 「兒童들이 훌륭한 活動條件를 유지하는데 어떤 책임과 지도력(initiative)을 가지며 또 그들의 經驗을 相互協力의 精神에서 서로 나누어 가질 수 있는 機會를 제공한다」<sup>(18)</sup>는 것이다. 더 具體的으로 學校圖書館은 學生들의 教育活動(학교에서 어떤 目的下에 計劃한 教育內容이라는 의미에서의(Curriculum)에서 「① 그 活動過程에 있어서 직접적인 경험이 가지는 役割 ② 學生의 個人의in 差異 고려 ③ 한 주제를 배우기 시작할 때 적당한 때와 배우는 者의 성숙도를 측정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맞추어야 한다는 사실」<sup>(20)</sup> 등을 자기의 役割의 中心課題로 삼게 된다. 그리고 R. H. Rewis는 Fargo의 學校도서관의 目標를 中心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학교도서관 봉사(기능)의 7가지 기준을 提示하고 있다.

1. 學生과 教師가 活用할 수 있도록 적절한 도서자료를 수집하고 그리고 이 자료를 조직했느냐?

2. 도서관을 풍부한 教育課程, 學生들의 탐구정신, 훌륭한 문현의 dissemination 등을 위한 機關으로 만들었는가?

3. 研究와 自己教育에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도서 및 도서관의 利用法을 가르쳤는가?

4. 讀書習慣의 成長을 복돋아 출판한 분위기를 조성했는가?

5. literary Appreciation을 자극했는가?

6. 餘暇善用의 場으로서 도서 및 도서관의 有用性을 주지시켰는가?

7. 알맹이 있는 社會的 經驗을 제공했는가?<sup>(21)</sup>

이와같은 學校圖書館의 機能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性質을 中心으로 할 때는 ① 學生個人의 힘을 증진시키는데 관련된 것 ② 學習環境改善에 관련된

(17) 정필모, *Op.Cit.*, p.189.

(18) Henery, H. B. *Op.Cit.*, p.156.

(19) *Ibid.*, p.154.

(20) 김중한, 학교도서관 p.19

(21) Henry, H. B., *Op.Cit.*, p.156.

1 ③ 地域社會의 봉사에 바탕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機能의 적용영역을 中心으로 分類하는 경우는 學習活動能力, 자료수집, 정리영역, 학생지도영역 등이 그 中心이 될 것 같다.

M. P. Douglas는 "Teacher's Librarian"에서 사서로서의 활동범위를 中心으로 하여 ① 교사와 어린이의 學習活動을 위한 봉사기관 ②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教育機能을 가진 教育機關 ③ 學習에 充分한 자료를 수집, 정리, 보관하고 활용하는 資料 Center ④ 學習에 必須的 條件인 독서를 장려하고 지도하는 독서 Center<sup>(22)</sup>로 나누고 있다.

이러한 學校도서관의 機能을 檢討해 보면 또 다른 관점에서 그리고 보다 포괄적인 두개의 機能 즉 첫째 「이용한다」는 의미에서 기능 둘째 「정리한다」라는 뜻에서의 機能으로 大別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학교도서관은 적절히 그리고 최대한 利用되어야 한다. 지역 사회에 對해서, 그리고 학생과 교사에 대해서 대출업무와 참고업무는 이 「이용」의 적절적 활동이 될 것이고 특히 學生들에 대한 지도업무 다시 말해서 도서관의 적극적이고 능숙한 이용을 조장하는 업무는 도서관의 教育的 機能중에서 가장重要な 것이 될 것이다.

「정리」의 기능은 이용될 수 있는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 관리 文化축적 쇠헌자식의 보급등의 기능이라고 할 것이다. 이 기능은 학교도서관의 教育的 機能은 신도하는役割을 수행한다. 이와같은 두 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T. R. Macolvin은 제의하고 있다.

1. 가정독서를 위해 대중해 출 도서의 준비.
2. 백종도서 외에 library premises 위에서 읽혀져야 할 도서 및 영기간행물의 준비.
3. 참고자료 즉 資料的情報의 구독에 필요한 자료의 학습 및 나사여의 도움을 주는 자료, 情報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사킬 수 있는 자료등의 준비.
4. 도서관의 관리와 조직을 맡아 보고 學生독서가족을 지도, 교육, 고유할 수 있는 능숙한 전무인사의 확보……」<sup>(2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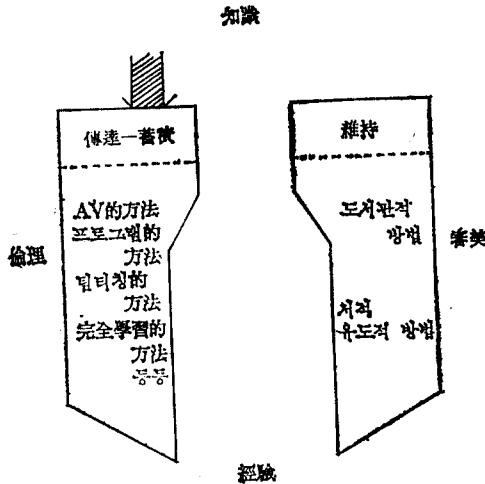
학교도서관의 모든 活動은 教育的이다. 즉 學生들의 教育目標達成의 活動에 관계된 것이기에 그러하다.

학교도서관의 機能을 학생을 위한 서비스 中心으로 보게 되면 보다 分明하게 도서관의 교육활동이 드러난다.

金斗弘은 이러한 觀點에서 학교도서관이 教育의 過程 즉 教授—學習活動의 基本的構造圖에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시사해주고 있다.

(22) Douglas, M. P., *The Teacher Librarians Hand Book* Chicago, A. L. A. 1949 pp2~4(金孝貞 "教科書에 있어서의 교육자료원에 대한 研究" 중앙대 교고 춘문집 제16집 1971. p. 135)  
이와 비슷한 형태로서 강일세는 ① 봉사기관으로서의 학교도서관 ② 교육기관으로서의 학교도서관 ③ 자료센터로서의 학교도서관 ④ 헤르네이션 컨цеп트로서의 학교도서관 등이 제안하고 있다(강일세, 학교도서관용역지침 pp. 23~33)

(23) Macolvin, L. R., *Public Library Services for Children*, UNESCO, 1957.



教育過程의 두 측면 즉 지식을 전달하고 축적하는 측면과 전달 축적된 지식을 유지 발전시키는 측면에서 학교도서관은 後者의 측면을 문제삼아 보다 차원 높은 것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또 그러한 능력을 기루어 주는데서 그機能을完遂하는 것이다.

학생들의 經驗現場(교육活動의 現場)에서 一次的으로 획득된 지식을 유지 발전시키는 학교도서관의 기능에 대한 여러 세분된 活動영역을 제안할 수 있다.

첫째, 教育의 目的面에서 학교도서관은 교육의 目的에 도달될 수 있는 자료의 제공과 이 자료의 선택 이용할 수 있는 지식, 기술, 태도등의 지도를 담당한다.

둘째, 교육기능의 면에서 학교도서관은 학습활동의 센터, 독서活動의 場所, 자료의 제공, 정보의 제공, 페크리에이션의 장소등에 대한 임무를 다 한다.

셋째, 教育活動面에서 학교도서관은 독서활동의 장소, 보는 활동의 장소, 듣는 활동의 장소, 창조적인 활동의 장소 등과 같은 역활을 수행한다.<sup>(25)</sup>

학교도서관은 이와같이 교육활동의 「통합적 役割 (integral part of instructional organization)」<sup>(26)</sup>을 수행하는 곳으로 보아진다.

(24) 金斗弘, 전국도서관 실태조사(下) p.18

(25) Henry, H.B., Op. Cit., p.156.

(26) 김경일, “학교도서관의 교육적기능과 육성정책”, 도서관 Vol.27 No6 1972. pp95—97. 참조

## II. 學校圖書館의 法的・行政組織上의 問題

學校圖書館의 存在意義와 役割에 대해 우리나라에는 1963年 圖書館法 制定으로 定式化한 바 있다. 圖書館法 第3條 3項에 「學校圖書館은 도서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하여學生 및 教員의 학습, 교양, 조사 및 리크레이션등 그 利用에 供함을 目的으로 하는學校設施」이라고 하는 規定은 現代的 學校圖書館의 개념을 代表할 수 있는가에 대해 얼마간의 의문이 남는다. 法에 明示된 그대로의 學校圖書館은 「學習補助機關」이라는 전통적인 意味보다는 한걸음 발전한 것이지만 教育의 힘으로서의 學校圖書館이 기애에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역시 이런 類의 학교도서관은 要約된 「圖書館現狀論」<sup>(27)</sup>에 의거한 것이지 文化暢達의 적극적 機能에一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學校圖書館에 대한 그 외의 많은 法的・行政組織에서도 이와같은 不充分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

### 1. 學校圖書館 行政組織上의 問題

#### ※ 關係法規

(1) <文教部職制> (대통령령 第5320號 1970.8.31) 第13條 3項—6에 따로 圖書館의 지도·감독은 文教部 社會教育局 社會教育課에서 맡도록 되어 있다.

(2) <서울특별시·부산시·道의 教育委員會職制> (대통령령 제2963호, 1967.3.27) 第5條 5項—4에 서울특별시 教育委員會에서는 문화체육과에서 圖書館行政을 맡게된다는 内容이 規定되어 있으며, 同職制 5條 3項 7에는 初等教育課에서 學級文庫의 지도를 맡도록 規定되어 있다.

(3) <부산시·道>의 教育委員會 사무분장 규칙에 의하면 부산직할시 및 各道教育委員會에서는 社會體育課 社會教育係에서 公共圖書違營 및 지도·감독을 맡게 하고 있으며, 初等教育課에서 學級文庫의 지도를 맡게 하고 있다.

#### ※ 問題點

① 圖書館 行政組織은 地域단위로 이루어져 있음을 볼 수 있는데 圖書館行政이 指導行政의 성격을 갖인 것이기에 수긍이 간다. 그러나 文教部內의 圖書館行政의 政策的 배려를 할 수 있고 또 圖書館의 專門性을 保障할 수 있는 組織上의 어떤 힘이 있어야 할 것이다. 文教部 社會教育局 社會教育課 成人教育係의 소관사무로써 圖書館行政을 지휘·통제하고 있는 것은 圖書館의 重大性에 대한 行政當局의 認識不足이라 해야 할 것이다.

② 서울특별시·부산시 各 道教育委員會에서는 公共圖書館의 지도업무만을 規定하

(27) 정필모, 도서관학의 새로운 체계, 중앙대학교 논문집 14집, 1969. p. 86.

고 있을뿐 圖書館의 지도·감독을 위한 사무분장 規定이 없을 뿐만 아니라, 公共圖書館을 일반사무 부서의 소관업무가 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非專門人士에 의해 관장되는 圖書館에서 圖書館教育의 機能을 기대 할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圖書館業務의 專門性은 自律的 規制에 의해서만 그 진정한役割을 기대 할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學級文庫는 初等教育課에서 지도하는 것으로 規定하는 것은 마치 學級文庫가 初等教育에서 만이 所用되고 또 감독받아야 할 것으로 誤認될 우려가 있다.

## 2. 學校圖書館 設置 및 施設에 關한 問題

### ※ 關係法規

① 圖書館法 第25條(設置) ① 國民學校·中學校·高等學校에는 圖書室 또는 圖書館을, 실업전문학교, 전문학교, 초급대학, 대학(교) 교육대학, 사범대학에는 圖書館을 두어야 한다. ② 學校圖書館의 施設基準은 따라 차령으로 定한다.

② <學校施設·設備基準令> (대통령령 第6854號, 1973. 9. 14)

#### 第5條(校舍)

(1) 校舍는 學習과 保健위생에 적합한 것으로서 이에는 적어도 다음의 시설을 두어야 한다. 다만 教育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하나의 施設을 다른 施設로 겸용 할 수 있다.

#### 1-5항 생략

#### 6항 도서실

(2) 도서실의 열람좌석수 및 비치도서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 도서실의 열람좌석수 및 비치도서수

구 분	열 람 좌 석 수	도 서 수
국민학교	보통교실 겸용	1학급당 단행본 100권 이상
중 학 교	1학급당 3석, 다만 학교마다 20석 이상어야 한다.	1학급당 단행본 120권 이상, 다만 학교마다 500권 이상이어야 한다.
고등학교 실업고등전문학교 전문학교	1학급당 5석, 다만, 학교마다 20석 이상이어야 한다.	1학급당 단행본 150권 이상, 다만, 학교마다 600권 이상이어야 한다.

(3) <學校 教具設備基準令> (문교부령 第326號, 1973. 9. 17)

#### 第3條(校舍設備의 종목과 기준)

① 國民學校·中學校와 高等學校의 보통교실, 각 특별교실 및 그 준비실, 시청각교실 및 그 준비실과 도서실에 비치하여야 할 설치의 종목은 다음과 같다.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실 및 도서실의 설비종목

구 분	설 비 의 종 목
도 서 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 열람용 책상과 결상</li> <li>◦ 도서목록 카아드함</li> <li>◦ 서가, 카운터</li> <li>◦ 기타 도서실에 필요한 설비</li> </ul>

(5) <學校施設・設備基準令> 第16條 및 부칙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學校年度別 施設 보충에 관한건(문교부령 第327號. 1973.10.2)

第3條(미달시설·시설보완)

① 今 부칙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高等學校의 미달된 施設・設備의 年度別 보완은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學校施設・設備基準令 부칙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高等學校의 年度別 施設 보충基準

년 도	1973年	1974年	1975年
서 울 특 별 시 부 산 시	80%	100%	
도 청 소 재 지	80%	90%	100%
기 타 지 역	70%	80%	100%

※ 問題點

① 圖書館法 25條에 의하면 圖書館(室)의 設置를 의무화 하고 있어면서도 現存 學校圖書館이 設置되어 있는 數는 1973年 韓國圖書館統計에 의하면 全體學校의 33.7% 만이 設置하고 있어 學校行政家들이 圖書館法을 無力化하고 있으며, 設置하고 있는學校中 대다수의 school가 圖書館을 다른 용도와 겸하고 있어 圖書館 本來의 目的을 수행하기 위한 專用圖書館 設置는 소원하다고 본다.

② 學校施設・設備基準令에 열람실의 규모만이 언급되어 있을뿐 기타도서관 시설의 규모에는 전혀 規定사항이 없을뿐만 아니라 質的관리에도 언급이 없다는 것은 곧 圖書館의 관리를 學校行政家에게 위임한다는 것으로 이것은 現實的으로 學校圖書館 設置・施設이 극히 형식화할 우려가 있다.

③ 學校施設基準令 第5條에 校舍안에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施設・設備12種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圖書館施設이다. 실제 이 12種의 施設・設備中 圖書館을 제외하면 대개 school의 基本施設로써 法規定이 없더라도 사실상 있어야 하는 것 들이다. 그렇다고 하면 教育의 統合의 場이요 중추기관인 圖書館施設・設備는 의당히 별도로 規定되어야 옳은 것이다. 또한 1975年까지는 모든 school가 圖書館을 設置하도록 學校年度別 施設

보통에 관한 件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전국 초·중·고등학교는 기준년도까지  
양과 같은 절에 있어서 미흡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3. 司書教師 및 學校司書에 關한 問題

#### i) 司書教師의 配置基準

##### ※ 關係法規

(1) 圖書館法 第6條 「公共圖書館과 學校圖書館에는 關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圖書館資料 및 運營에 關한 司書職員 또는 司書教師를 두어야 한다.

(2) 圖書館法施行令 第6條

① 國民學校에는 1人 以上의 司書教師 또는 1人 以上의 司書의 職務를 담당할 教師를 둔다.

② 中學校와 高等學校에는 그 學生數가 1,200人 以下일 때는 1인의 司書教師나 1인의 司書의 職務를 담당할 教師를 두며 그 學生數가 1,200人을 초과 할 때는 2인의 司書教師나 2인의 司書의 職務를 담당할 教師를 둔다.

##### ※ 問題點

① 위와 같이 法條文에는 司書教師를 두어야 한다는 강제 規定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文教部에서 1968년에 단지 33명의 司書教師를 배정 하였을 뿐 以後 지금껏 한명의 司書教師도 배정치 않아 法治行政의 原理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각급학교 司書教師 配置規定 가운데 「司書의 職務를 담당할 教師」는 司書教師의 不足을 배우는 조치이긴 하지만 이것이 임시 조치임을 밝히는 어떤 단서도 없다는 사실이며, 또한 겸임교사에 대한 授業時間에 대한 제한 規定도 없다는 사실이다. 司書에 대한 專門의 훈련을 받고 司書만 전담할 직원은 學校圖書館의 教育的 機能의 極大性에 비추어 보아 충분히 요구 될 수 있는 것이다.

③ 圖書館業務의 專門牲과 技術牲에 비추어, 그리고 學校圖書館의 機能에 비추어 司書教師의 人員配定 規定은 많은 問題가 있다. 國民學校에는 1人, 中等學校에는 學生 1,200人당 1人으로서는 극히 형식적인 圖書館 運營밖에 할 수 없을 것이고 또 圖書館의 本務의 잡무에 여념이 없게 할 것이다.

#### ii) 司書教師의 法的地位

##### ※ 關係法規

司書教師 資格基準

學校別	中等學校	國民學校	特殊學校	유 차 원
司書教師	1. 대학 졸업자로써 재학중 圖書館學을 전공하고 所定의 교직과 정을 이수한 자 2.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써 소정의 司書教師 양성 강습을 받은 자			

敎師公務員法 第3條에는 図書教師의 資格基準을 말의 표와 같이 制定하고 있다.

#### \* 問題點

① 図書教師의 法的 地位規定이 不充分하여 図書教師는 特殊教師의 계열에 屬하므로 上位資格을 취득하기 위한 승진기회 및 그 制度가 마련 되어 있지 않다. 図書教師로 일명 職業 研究을 단순히 特定分野의 일에 종사하는 사람의 地位外에 아무것도 아니라 는 것이다.

② 國民學校와 中等學校의 図書教師 사이에 資格區分이 없다는 것이다. 一般教師는 初等教師와 中等教師사이에 투영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教師사이에 서로 準教師, 正教師, 1급, 2급 등의 많은 資格區分을 두고 있어면서도 유독 図書教師만은 初·中等의 区分이 없다는 것은 法制定 意義로 보아 初等教師에게 図書教師로써의 자격취득의 절차를 염두에 두었을 뿐으로 한편 찬양할 일이나, 상대적으로 中等司書教師의 身分·자격을 확정화한 바에 質的지수가 크게 우려되고 있다.

#### (ii) 學校司書에 關한 問題

學校司書에 대해서는 身分保障을 위한 法的 근거가 전혀 없으며, 配置基準에 關한規定도 물론 없다. 이것은 學校司書가 學校圖書館 業務의 重責을 맡고 図書教師의 職業을 담고 있음을 감안 할 때 시급한 法制定이 요구된다. 現存 學校司書는 총탁(임시직)으로 채용되어 일반교직원과 분리되어 기성회비 또는 學生費이 내는 도서비로써 봉급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 4. 學校圖書館 資料에 關한 問題

#### \* 關係法規

學校施設·設備基準台 第五條에 의한 각급 학교에서 비치 하여야 할 圖書數는 다음과 같다.

각급학교 圖書 비치 기준

學校別	國書數	圖書數	數
國民學校	1학급당 단행본 100권 이상		
中學校	1학급당 단행본 120권 이상, 다만 학교마다 500권 이상		
高等學校 實業高等 專門學校 專門學校	1학급당 단행본 150권 이상, 다만 학교마다 600권 이상 이어야 한다.		

#### \* 問題點

① 단행본 圖書의 數의in 規定한을 定해 놓았을 뿐 質의in 圖書확보 規定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教師를 為한 研究圖書의 基準이 規定되어 있지 않아 圖書의 量에만

치중하여 無用圖書, 저질도서를 확보하여 不用圖書館이 될 우려가 있다.

② 단행본 圖書이외의 다른 資料에 대한 規定이 없으므로 圖書館의 다양한 奉仕體制가 되지 못할 염려가 있다.

## V. 結論

文獻考察을 通하여 學校圖書館의 機能 및 教育的 活動을 알아 보았으며, 現行 韓國의 學校圖書館이 法的・行政的 뒷받침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를 분석・나아한 結果 다음과 같은 몇개의 結論을 내린다.

① 文教部내에 圖書館行政의 政策的 배려를 할 수 있는 組織이 되어 있지 못하여 각 市・道 教育委員會과 圖書館行政이 一般事務部署의 소관업무가 되어 비전문인사에 의해 圖書館業務가 관장되고 있으므로 圖書館의 教育的 機能은 수령하기 어려우며 學校圖書館를 爲한 圖書館 行政은 不在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② 圖書館 設置가 의무사항 인데도 全國의 많은 學校가 圖書館을 設置하고 있지 않으며, 學校施設・設備基準令에 圖書館을 다른 용도로 침용할 수 있게끔 規定되어 있으므로 극히 형식적인 침용도서관을 設置할 염려가 있다.

③ 學校施設・設備基準令에는 열람실의 규모만을 規定하고 있고 나 圖書館施設에 대한 設置規定이 없기 때문에 學生들의 資料利用의 極大化를期할 수 있다.

④ 1973年 文教部令으로 制定된 學校年度別 施設보충 계획에 의하면 1975年까지는 圖書館이 設置되어야 하나 現在의 설치 상황으로 보아 그 가능성은 상당히 회박할 것 같다.

⑤ 圖書館法 施行令 第6條에 國民學校부터 中・高等學校까지 學校의 규모에 관계없이 겸임司書教師 즉 司書의 職務를 담당할 教師를 들수 있는 規定이 있는 관계로 學校行政家들이 專任司書教師를 기피할 法的 근거를 마련 해 주고 있으며, 겸임司書教師들의 수업시간에 대한 제한조치가 없으므로 과중한 業務로 因한 圖書館 기피 형상을 낳게 하고 있다.

⑥ 司書教師의 資格基準에 國民學校와 中等學校의 資格區分이 있으며 司書教師가 特殊계열의 教師에 屬해 있으므로 승진기회및 그 제도가 마련 되어 있지 않으므로 有能한 圖書館 責任者の 기피를 촉진 하고 있다.

⑦ 學校司書에 대한 法的근거가 없이 身分保障, 급여에 대한 制度의 保障이 되지 못하므로 司書資格者の 學校司書로의 유인체제가 마련 되어 있지 못하다.

⑧ 良質의 圖書를 莊書하기 위한 教科別 장서 배분기준, 教師・學生用의 장서 배분기준이 없으므로 극히 형식적이고 無用한 장서로써 圖書를 확보 할 것이 우려되며 비도서자료의 비치규정이 없으므로 다양한 圖書館 奉仕體制가 마련되길 못하고 있다.

以上 學校圖書館 法的·行政的인 問題點에 간단하게 結論을 뱗었지만 무엇보다 學校圖書館 發展을 爲해서는 法의 허점이 있고 行政組織이 圖書館發展을 위한 것이 아닐지라도 學校行政家내지 정책 당국자들이 學校圖書館의 重要性을 감안하여 圖書館이 教育的 機能을 수행할 수 있도록 완벽한 배려를 해 주는 것이 더욱 重要하다.

차후 이 方面의 研究者들은 法내지 行政組織의 方向을 제시 해 주며, 나아가 現存 學校圖書館의 實態를 파악한 法的·行政組織上의 問題點을 분석 한 많은 研究가 기대된다.

## 參 考 文 獻

### ○ 脚註及 代註

# The Legal and Administrative Problems of School Library

★  
Kim, Jung So

## (Summary)

This study aims at diagnozing the existing school library laws and their enforcement regulations together with the library organization, and finding out any problems in them for the lack of legal and administrative support has been considered the main hindrances to the development of school library.

The results of the work are as follows:

1. Full use of materials on the part of students is impossible because there is no description in the school facilitier enforcement regulations except that of reading room.
2. No administrative consederation on the school library.
3. No incentive to be an able librarians because there is no devision in the lebrary teacher eligibility between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level.